

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987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'2001. 9.
제출자 : 안산시장

제안이유

- 현행 조례 운용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가. 보육위원회 위원중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삭제함 (안 제3조제2항제6호 삭제).
- 나. 보육시설의 시설장등에 대하여는 그 자격요건이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(보건복지부령)에 규정되어 있는 바, 그외에 명확한 근거없이 수탁자와 동일하게 규정된 규제사항을 정비함 (안 제5조, 제8조, 제10조, 11조 및 제14조).
- 다. 보육시설의 복수위탁 금지에 관하여 개인인 경우에 한하여 규정하였던 것을 법인을 추가하여 형평을 기함 (안 제13조).

개정조례안 : 별첨

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조제3항
-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해당없음

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보육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.

제5조 (위원회의 기능)제6호중 “및 시설장”을 삭제한다.

제8조 (위탁운영)제2항중 “및 시설장”을 삭제한다.

제10조의 조명 “수탁자와 시설장의 의무”를 “수탁자의 의무”로 하고,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“수탁자와 시설장은”을 “수탁자는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13조 (수개이상의 위탁금지)중 “개인에게”를 “특정인(법인 포함)을”로 하고, “보육시설”을 “시립보육시설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중 “및 시설장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소관 실·과 | | 사회여성과 |
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임 | 실·과장 직위·성명 |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|
| 안 | 담당·팀장 직위·성명 | 아동보육팀장 김종수 |
| 자 | 담당자 성명·전화 | 김종수 (행정 2265) |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3조 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(위원회 위원 1/3 이상)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| <p>제3조 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_____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〈삭제〉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5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시립보육시설 수탁자 및 시설장 선정에 관한 사항</p> <p>7. ~ 8. (생략)</p> | <p>제5조 (위원회의 기능) _____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_____ 〈삭제〉 _____</p> <p>7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8조 (위탁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수탁자 및 시설장 선정은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.</p> | <p>제8조 (위탁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〈삭제〉 _____</p> |
| <p>제10조 (수탁자와 시설장의 의무) ① 수탁자와 시설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수탁자와 시설장은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③ ~ ⑦ (생략)</p> | <p>제10조 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_____</p> <p>② 수탁자는 _____</p> <p>③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11조 (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시설장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 그 시설장을 시 광활구역내에서 3년간 시립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.</p> | <p>제11조 (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〈삭제〉</p> |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|
|---|--|
| <p>제13조 (수개이상의 위탁금지) 시장은 개인에게 시의 관할구역내에 2개소이상의 보육시설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.</p> <p>제14조 (지도감독) ①시장은 수탁자 및 시설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1회 정기감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. ②(생략)</p> | <p>제13조 (수개이상의 위탁금지) ━━━━━━ 특정인 <u>(법인 포함)을</u> ━━━━━━ 시립 <u>보육시설</u> ━━━━━━</p> <p>제14조 (지도감독) ① ━━━━━━ 〈산 제〉 ━━━━━━ ━━ ② (현행과 같음)</p> |
| | |

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| |
|------------|-----|
| 의 안 번 호 | 987 |
|------------|-----|

제안년월일 : 2001. 9. 19.

제 안 자 : 경제·사회위원장

1. 수정 이유

- 보육시설의 시설장 규제사항을 신설하고, 보육시설 운영의 중복 위탁금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- 제11조의 4항에 “시설장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 그 시설장은 시 관할 구역내에서 3년간 시립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”는 조항 신설
- 제13조의 제목 “(수개 이상의 위탁금지)”을 “(중복 위탁 금지)”로 하고, 동조 중 “특정인(법인 포함)”을 “개인·법인·단체”로, “2개소 이상”을 “1개소 이상”으로, “수탁자로” 다음에 “중복하여”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함.
(안 제13조)

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1조의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설장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 그 시설장은 시 관할 구역내에서 3년간 시립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제13조의 제목“(수개 이상의 위탁금지)”을 “(중복위탁금지)”로 하고, 동조 중“특정인(법인포함)을”을 “개인·법인·단체를”로, “2개소 이상”을 “1개소 이상”으로, “수탁자로 지정”을 “수탁자로 중복하여 지정”으로 한다.

조문대비표

| 원안 | 수정안 |
|---|---|
| <p>제11조(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) <u>①~③(생략)</u> <u>〈신설〉</u></p> | <p>제11조(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) <u>①~③(원안과 같음)</u> <u>④시설장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 그 시설장은 시 관할구역내에서 3년간 시립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.</u></p> |
| <p>제13조(수개 이상의 위탁금지) 시장은 <u>특정인(법인포함)을 시의 관할구역내에</u> <u>2개소이상의 시립보육시설 수탁자로 지정</u> <u>할 수 없다.</u></p> | <p>제13조(중복 위탁금지)..... <u>개인·법인·단체를.....</u> <u>1개소 이상.....수탁자로</u> <u>중복하여 지정.....</u></p> |